商业特许经营管理条例 (프랜차이즈사업 관리조례)

第一章 总则 (제1장 총 칙)

第一条 为规范商业特许经营活动,促进商业特许经营健康、有序发展,维护市场秩序,制定本条例。

제1조 프랜차이즈 사업 활동을 규범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의 건강한 발전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第二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商业特许经营活动,应当遵守本条例。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역내의 프랜차이즈 사업 종사자는 본 조례를 따라야 한다.

第三条 本条例所称商业特许经营(以下简称特许经营),是指拥有注册商标、企业标志、专利、专有技术等经营资源的企业(以下称特许人),以合同形式将其拥有的经营资源许可其他经营者(以下称被特许人)使用,被特许人按照合同约定

在统一的经营模式下开展经营,并向特许人支付特许经营费用的经营活动。 企业以外的其他单位和个人不得作为特许人从事特许经营活动。 제3조 본 조례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이하 프랜차이즈 사업)이라 칭함은 등록상표・기업표지・특허・특허기술 등의 경영자원을 소유한 기업(이하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계약 형식으로

경영자원을 제3자(이하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계약약정 방식에 따라 사업활동을 경영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자에게 프랜차이즈사업 비용을

지불하는 경영활동을 지칭한다. 기업 이외의 기타 조직과 개인은 사업자로서 프랜차이즈 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第四条 从事特许经营活动,应当遵循自愿、公平、诚实信用的原则。

제4조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자발적으로, 공평·성실신용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第五条

国务院商务主管部门依照本条例规定,负责对全国范围内的特许经营活动实施监督管理。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商务主管部门和设区的市级人民政府商务主管部门依照本条例规定,负责对本行政区域内的特许经营活动实施监督管理。

제5조 국무원 상무 주관부서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전국 범위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관리·감독한다. 성·자치구·직할시 및 구가 설치된 시급 정부의 상무 주관부서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각 행정구역내의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하여 관리 ㆍ감독한다.

第六条 任何单位或者个人对违反本条例规定的行为,有权向商务主管部门举报。商务主管部门接到举报后应当依法及时处理。

제6조 임의의 개인 및 조직은 본 조례의 규정위반 행위를 상무 주관부서에 고발할 수 있다. 상무주관부서는 고발 접수 후, 즉시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第二章 特许经营活动 (제2장 프랜차이즈 경영활동)

第七条 特许人从事特许经营活动应当拥有成熟的经营模式,并具备为被特许人持续提供经营指导、技术支持和业务培训等服务的能力。 特许人从事特许经营活动应当拥有至少2个直营店,并且经营时间超过1年。

제7조 프랜차이즈 사업에 종사하려면 성숙된 경영방식을 소유하여야 하며 프랜차이즈 가맹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기술지원·업무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할 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두개 이상의 직영점을 확보하여야 하며, 영업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야 한다.

第八条 特许人应当自首次订立特许经营合同之日起15日内,依照本条例的规定向商务主管部门备案。 在省、自治区、直辖市范围内从事特许经营活动的,应当向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商务主 管部门备案;跨省、自治区、

直辖市范围从事特许经营活动的, 应当向国务院商务主管部门备案。特许人向商务主管部门备案,应

当提交下列文件、资料: 제8조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본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첫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무 주관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성・자치구・직할시 내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소재지의 성·자치구·직할시 정부의 상무 주관부서에 등록하여야 하며, 성·자치구·직할시 범위를 벗어난 프랜차이즈 사업은 국무원 상무 주관부처에 등록하여야 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상무 주관부서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一)营业执照复印件或者企业登记(注册)证书复印件;
- (1) 영업허가증 사본 또는 기업등록증서 사본
- (二)特许经营合同样本;
- (2) 프랜차이즈 사업 계약서 견본
- (三)特许经营操作手册;
- (3)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수칙
- (四)市场计划书; (4) 시장계획서
- (五)表明其符合本条例第七条规定的书面承诺及相关证明材料;
- (5) 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부합된다는 서면 승인서 및 관련 증명자료 (六)国务院商务主管部门规定的其他文件、资料。
- (6) 국무원 상무 주관부서가 규정한 기타 자료 特许经营的产品或者服务,依法应当经批准方可经营的,特许人还应当提交有关批准文件。 프랜차이즈 사업의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관련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第九条 商务主管部门应当自收到特许人提交的符合本条例第八条规定的文件、资料之日起10日内予以 备案,并通知特许人。特许人提交的文件、资料不完备的,商务主管部门可以要求其在7日内补充提交 文件、资料。 제9조

상무 주관부서는 프랜차이즈 사업 예상가맹자 본 조례 제8조의 의거 제출한 자료의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하고 프랜차이즈 사업 예상가망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사업 예상가 맹자가 제출한 자료가 완벽하게 구비되지 않은 경우 상무 주관부서는 7일 이내에 보완토록 요구할 수 있다.

第十条 商务主管部门应当将备案的特许人名单在政府网站上公布,并及时更新。

제10조 상무 주관부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자 등록명단을 정부 사이트에 공시하고 적시에 갱신하여 야 한다.

第十一条 从事特许经营活动,特许人和被特许人应当采用书面形式订立特许经营合同。特许经营合同应当包括下列主要内容:

제11조 프랜차이즈 사업에 종사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자와 프랜차이즈 가맹자는 서면으로 프랜차이즈 사업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프랜차이즈 사업 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特许人、被特许人的基本情况; (1) 프랜차이즈 사업자 \cdot 프랜차이즈 가맹자의 기본상 황

- (二)特许经营的内容、期限;
- (2) 프랜차이즈 사업의 내용・기한 (三)特许经营费用的种类、金额及其支付方式;
- (3) 프랜차이즈사업비용,내역,금액,지불방식 (四) 经营指导、技术支持以及业务培训等服务的具体内容和提供方式;
- (4) 경영지도・기술지원 및 업무교육 등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공방식 (五)产品或者服务的质量、标准要求和保证措施;
- (5) 제품・서비스의 품질, 표준 및 보증조치

(六)产品或者服务的促销与广告宣传;

- (6) 제품, 서비스의 판매, 홍보
- (七)特许经营中的消费者权益保护和赔偿责任的承担;
- (7) 프랜차이즈 사업 중의 소비자 권익보호와 배상책임 부담
- (八)特许经营合同的变更、解除和终止;
- (8) 프랜차이즈 사업 계약의 변경,해지 및 종료
- (九)违约责任;

- (9) 위약책임
- (十)争议的解决方式;
- (10) 분쟁 해결방법

(十一)特许人与被特许人约定的其他事项。

(11) 프랜차이즈 사업자와 가맹자 간에 약정한 기타 사항

第十二条 特许人和被特许人应当在特许经营合同中约定,被特许人在特许经营合同订立后一定期限内,可以单方解除合同。

제12조 프랜차이즈 사업자와 프랜차이즈 가맹자는 사업 계약 체결 후 일정한 기한 내에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명확히 약정해야 한다.

第十三条 特许经营合同约定的特许经营期限应当不少于3年。但是,被特许人同意的除外。特许人和被特许人续签特许经营合同的,不适用前款规定。

제13조 프랜차이즈 사업 계약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자와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사업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十四条 特许人应当向被特许人提供特许经营操作手册,并按照约定的内容和方式为被特许人持续提供经营指导、技术支持、业务培训等服务。

제14조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경영운영 수칙을 제공하고 약정 내용과 방식에 따라 가맹자에게 지속적인 경영지도·기술지원·업무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第十五条 特许经营的产品或者服务的质量、标准应当符合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定的要求。

제15조 프랜차이즈 사업의 제품·서비스의 품질은 법률·행정법규 및 국가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第十六条 特许人要求被特许人在订立特许经营合同前支付费用的,应当以书面形式向被特许人说明该部分费用的用途以及退还的条件、方式。

제16조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사업 계약전에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비용 지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내역 및 반환조건·방식 등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第十七条 特许人向被特许人收取的推广、宣传费用,应当按照合同约定的用途使用。推广、宣传费用的使用情况应当及时向被特许人披露。

特许人在推广、宣传活动中,不得有欺骗、误导的行为,其发布的广告中不得含有宣传被特许人从事特许经营活动收益的内容。

제17조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가맹자로부터 지급받은 홍보비용은 계약서에 약정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홍보비용 사용 상황은 적시에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기만·오도 등 과장 홍보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광고물에 프랜차이즈 가맹자의 수익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第十八条 未经特许人同意,被特许人不得向他人转让特许经营权。被特许人不得向他人泄露或者允许他人使用其所掌握的特许人的商业秘密。

제18조 프랜차이즈 가맹자는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프랜차이즈 사업 경영권을 양도할 수 없다. 프랜차이즈 가맹자는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인이 사용토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第十九条 特许人应当在每年第一季度将其上一年度订立特许经营合同的情况向商务主管部门报告。

제19조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매년 1/4분기에 전년도의 프랜차이즈 사업 계약실적을 상무 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第三章 信息披露(정보공시)

第二十条 特许人应当依照国务院商务主管部门的规定,建立并实行完备的信息披露制度。

제20조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국무원 상무 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완전한 정보공시 제도를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第二十一条 特许人应当在订立特许经营合同之日前至少30日,以书面形式向被特许人提供本条例第二十二条规定的信息,并提供特许经营合同文本。

제21조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프랜차이즈 사업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본 조례 제22조에서 규정한 정보와 프랜차이즈 사업계약 견본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第二十二条 特许人应当向被特许人提供以下信息:

제22조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一)特许人的名称、住所、法定代表人、注册资本额、经营范围以及从事特许经营活动的基本情况;

- (1)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명칭·주소·법정대표자·등록자본금 액수·영업범위 및 프랜차이즈 사업 종사 기본실적
- (二)特许人的注册商标、企业标志、专利、专有技术和经营模式的基本情况;
- (2)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등록상표・기업표지・특허・노하우 및 경영방식 등 (三)特许经营费用的种类、金额和支付方式(包括是否收取保证金以及保证金的返还条件和返还方式);
- (3) 프랜차이즈 사업비용 내역·금액 및 지불방식(보증금 수취여부 및 보증금의 반환조건・방식 포함) (四)向被特许人提供产品、服务、设备的价格和条件;
- (4)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제공하는 제품・서비스・설비의 가격・조건 (五)为被特许人持续提供经营指导、技术支持、业务培训等服务的具体内容、提供方式和实施计划;
- (5)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제공하는 경영지도·기술지원·업무교육 등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제공방식 및 실행계획
- (六)对被特许人的经营活动进行指导、监督的具体办法;

(6) 프랜차이즈 가맹자 대상의 경영활동 지도 · 감독의 구체적 방법

(七)特许经营网点投资预算;

- (7) 프랜차이즈 사업 영업망에 대한 투자예산 (八)在中国境内现有的被特许人的数量、分布地域 以及经营状况评估:
- (8) 중국 역내의 기존 가입 프랜차이즈 가맹자수・분포지역・영업실적 평가 (九)最近2年的经会 计师事务所审计的财务会计报告摘要和审计报告摘要;
- (9) 최근 2년간의 회계사 사무소 감사의 재무회계보고서 요약 및 회계감사보고서 요약 (十)最近5年內与特许经营相关的诉讼和仲裁情况;
- (10) 최근 5년 내의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 소송 및 중재 상황 (十一)特许人及其法定代表人是否有重大违法经营记录;
- (11) 프랜차이즈 사업자 및 법정대표자의 중요 위법 경영 기록 (十二)国务院商务主管部门规定的其他信息。
- (12) 국무원 상무 주관부서가 규정한 기타 정보

第二十三条 特许人向被特许人提供的信息应当真实、准确、完整,不得隐瞒有关信息,或者提供虚假信息。特许人向被特许人提供的信息发生重大变更的,应当及时通知被特许人。特许人隐瞒有关信息或者提供虚假信息的,被特许人可以解除特许经营合同。

제23조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진실·정확, 완벽해야 하며, 관련 정보를 숨기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第四章 法律责任 (제4장 법률 책임)

第二十四条 特许人不具备本条例第七条第二款规定的条件,从事特许经营活动的,由商务主管部门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并予以公告。

企业以外的其他单位和个人作为特许人从事特许经营活动的,由商务主管部门责令停止非法经营活动,

没收违法所得,并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 제24조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본 조례 제7조 2 항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에 종사한 경우, 상무 주관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불법소득 몰수 및 10만위안 이상, 5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한다. 기업 이외의 기타 조직과 개인이 프랜차이즈 사업에 종사한 경우 상무 주관부서는 불법 사업을 중지토록명하고 불법소득 몰수 및 10만위안 이상, 5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第二十五条 特许人未依照本条例第八条的规定向商务主管部门备案的,由商务主管部门责令限期备案, 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逾期仍不备案的,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并予以公告。

제25조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상무 주관부서에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상무 주관부서는 기한부 등록을 명하고 1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기간이 경과후에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한다.

第二十六条 特许人违反本条例第十六条、第十九条规定的,由商务主管部门责令改正,可以处1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并予以公告。

제26조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본 조례 제16조·제19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상무 주관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왜곡이 심한 경우 1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한다.

第二十七条 特许人违反本条例第十七条第二款规定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改正,处3万元以上1 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10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并予以公告;构成犯罪的,依法追 究刑事责任。 特许人利用广告实施欺骗、误导行为的,依照广告法的有关规定予以处罚。

제27조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본 조례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공상행정관리 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3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왜곡이 심한경우 10만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하는 한편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따라 형사책임을 추구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광고를 이용, 사기·오도행위시 광고법 관련 규정에 의거 처벌한다.

第二十八条 特许人违反本条例第二十一条、第二十三条规定,被特许人向商务主管部门举报并经查实的,由商务主管部门责令改正,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并予以公告。

제28조 상무 주관부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본 조례 제21조, 제23조 규정 위반 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고 1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왜곡이 심한 경우에는 5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과 아울러 관련 내용을 공시한다.

第二十九条 以特许经营名义骗取他人财物,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由公安机关依照《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的规定予以处罚。

以特许经营名义从事传销行为的,依照《禁止传销条例》的有关规定予以处罚。

제29조 프랜차이즈 사업자 명의로 타인 재물 탈취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 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자 명의로 다단계 판매를 했을 경우, 《다단계 판매 금지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第三十条 商务主管部门的工作人员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处分。

제30조 상무 주관부서의 주관업무직원이 직권 남용,직무 태만,사리 도모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한다.

第五章 附 则 (제5장 부 칙)

第三十一条 特许经营活动中涉及商标许可、专利许可的,依照有关商标、专利的法律、行政法规的规定办理。

제31조 프랜차이즈 사업중 상표허가·특허허가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상표. 특허 관련 법.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第三十二条 有关协会组织在国务院商务主管部门指导下,依照本条例的规定制定特许经营活动规范,

加强行业自律,为特许经营活动当事人提供相关服务。

제32조 관련 해당 협회는 국무원 주관 부서의 지도하에서 본 조례 규정에 따라 프랜차이즈 사업 규범을 제정하고 업종 자율을 강화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자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第三十三条 本条例施行前已经从事特许经营活动的特许人,应当自本条例施行之日起1年内,依照本条例的规定向商务主管部门备案;逾期不备案的,依照本条例第二十五条的规定处罚。 前款规定的特许人,不适用本条例第七条第二款的规定。

제33조 본 조례 시행전 프랜차이즈 사업에 이미 종사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본 조례의 규정에 의거, 상무 주관부서에 등록해야 하며, 기간이 경과되어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조례 25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전조항에서 규정한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본 조례 7조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第三十四条 本条例自2007年5月1日起施行。

제34조 본 조례는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商业特许经营备案管理办法(프랜차이즈사업등록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令

중화인민공화국상무부령

2011年 第5号

2011년 제5호

修订后的《商业特许经营备案管理办法》已经2011年11月7日商务部第56次部务会议审议通过,现予发布,自2012年2月1日起施行。《商业特许经营备案管理办法》(商务部2007年第15号令)同时废止。

部 长:陈德铭

2011年12月12日

수정후의 <프랜차이즈사업등록관리방법>은 2011년 11월 7일 상무부 제 56회 상무부회의에서 심사통과하고 현재 발표, 2012년 2월1일부터 시행. <프랜차이즈사업등록관리방법> (상무부2007년 제 15호령) 페지.

부장: 陈德铭

第一条 为加强对商业特许经营活动的管理,规范特许经营市场秩序,根据《商业特许经营管理条例》 (以下简称《条例》)的有关规定,制定本办法。

제1조 프랜차이즈 사업 활동을 규범하고 프랜차이즈상업의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프랜차이즈사업 관리조례>(이하 <조례>)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第二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以下简称中国境内)从事商业特许经营活动,适用本办法。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역내의 프랜차이즈 사업 종사자는 본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第三条

商务部及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商务主管部门是商业特许经营的备案机关。在省、自治区、直辖市范围内从事商业特许经营活动的,向特许人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商务主管部门备案; 跨省、自治区、直辖市范围从事特许经营活动的,向商务部备案。

商业特许经营实行全国联网备案。符合《条例》规定的特许人,依据本办法规定通过商务部设立的商业特许经营信息管理系统进行备案。

제3조 상무부 및 성.시.직할시의 인민정부상무주관부서는 프랜차이즈사업의 등록기관이다. 성.자치구. 직할시 내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소재지의 성.자치구.직할시 정부의 상무주관부서에 등록하여야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를 벗어난 프랜차이즈 사업은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프랜차이즈사업경영은 전국사이트 등록을 실시한다. <조례>에 의거하여 상무부가 설립한 프랜차이즈사업정보사이트에 등록을 해야한다.

第四条

商务部可以根据有关规定,将跨省、自治区、直辖市范围从事商业特许经营的备案工作委托有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商务主管部门完成。受委托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商务主管部门应当自行完成备案工作,不得再委托其他任何组织和个人备案。

受委托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商务主管部门未依法行使备案职责的,商务部可以直接受理特许人的备案申请。

제4조 상무부는 해당규정에 의해 성.자치구. 직할시 내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에 종사하는 사건 등록을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상무 주관부서에 위임해서 진행할수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상무 주관부서는 등록절차를 스스로 완성해야하며 임이의 조직이나 개인에게 재위임을 허락하지 않는다.

第五条

任何单位或者个人对违反本办法规定的行为,有权向商务主管部门举报,商务主管部门应当依法处理。

제5조 임이의 개인 및 조직은 본 방법의 규정위반 행위를 상무 주관부서에 고발할수 있다. 상무 주관부서는 고발 접수 후, 즉시 의법 처리해야 한다.

第六条

申请备案的特许人应当向备案机关提交以下材料:

- (一)商业特许经营基本情况。
- (二)中国境内全部被特许人的店铺分布情况。
- (三)特许人的市场计划书。
- (四)企业法人营业执照或其他主体资格证明。
- (五)与特许经营活动相关的商标权、专利权及其他经营资源的注册证书。
- (六)符合《条例》第七条第二款规定的证明文件。

在2007年5月1日前已经从事特许经营活动的特许人在提交申请商业特许经营备案材料时不适用于上款的规定。

- (七)与中国境内的被特许人订立的第一份特许经营合同。
- (八)特许经营合同样本。
- (九)特许经营操作手册的目录(须注明每一章节的页数和手册的总页数,对于在特许系统内部网络上提供此类手册的,须提供估计的打印页数)。
- (十)国家法律法规规定经批准方可开展特许经营的产品和服务,须提交相关主管部门的批准文件。

外商投资企业应当提交《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经营范围中应当包括"以特许经营方式从事商业活动"项目。

- (十一)经法定代表人签字盖章的特许人承诺。
- (十二)备案机关认为应当提交的其他资料。

以上文件在中华人民共和国境外形成的,需经所在国公证机关公证(附中文译本),并经中华人民共和国驻所在国使领馆认证,或者履行中华人民共和国与所在国订立的有关条约中规定的证明手续。在香港、澳门、台湾地区形成的,应当履行相关的证明手续。

제6조 등록을 신청하는 프랜차이즈사업자는 해당 등록기관에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프랜차이즈사업 운영 기본상황.

- (2) 중국영역내의 프랜차이즈가맹자의 매장 분포상황.
- (3) 프랜차이즈사업자의 시장계획서.
- (4) 기업의 영업허가증 혹은 기타주체자격증명.
- (5) 프랜차이즈사업에 관한 상표권,특허권 및 기타 경영자원의 등록증서.
- (6) <조례>7조2항의 규정에 의거한 증명문서.

2007년 5월1일전에 이미 프랜차이즈사업경영활동에 종사한 사업자는 사업등록자료를 제출시 우의 항목을 적용하지않는다.

- (7) 중국영역내에서 프랜차이즈가맹자와 체결한 프랜차이즈사업에 관한 첫 계약서.
- (8) 프랜차이즈 사업 계약서 견본.
- (9)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수칙 (수칙의 매장 (chapter)의 페이지와 수칙의 총 페이지를 기입해야한다. 기업내부인트라넷에서 제공한 운영수칙은 프린트버전의 총 페이지수를 기입해야한다.)
- (10) 프랜차이즈 사업의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관련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외자투자기업은 <외자투자기업허가증서> 를 제출해야한다. <외자투자기업허가증서> 의 경영범위에는 "프랜차이즈경영사업"이 기재되여야 한다.

- (11) 법정대표자의 싸인(인감도장)이 있는 프랜차이즈사업자의 승낙.
- (12)등록기관이 규정한 기타 자료.

우의 자료문서중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에서 형성한 자료는 해당국공증기관의 공증(중국어번역본첨부)하고 중화인민공화국영사관의 인증이 필요함(혹은 해당국과 중국이 이와 관련한 협정을 체결한 경우, 협정의 규정절차에 의거). 홍콩, 마카오, 대만에서 형성한 서류문서는 해당 증명 절차를 필요로 한다.

第七条

特许人应当在与中国境内的被特许人首次订立特许经营合同之日起15日内向备案机关申请备案。

제 7조 프랜차이즈사업자는 첫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관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第八条

特许人的以下备案信息有变化的,应当自变化之日起30日内向备案机关申请变更:

- (一)特许人的工商登记信息。
- (二)经营资源信息。
- (三)中国境内全部被特许人的店铺分布情况。

제 8조 프랜차이즈의 등록정보가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해당 주관부서에 변경신청을 등록해야 한다.

- (1)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공상등록정보.
- (2) 경영자원에 관한 정보.
- (3) 중국역내의 프랜차이즈가맹자의 매장 분포상황.

第九条

特许人应当在每年3月31日前将其上一年度订立、撤销、终止、续签的特许经营合同情况向备案机关报告。

제 9조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매년 3월31일 전으로 전년도의 프랜차이즈 계약서 체결, 해지, 종결, 재계약 상황을 해당 등록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第十条

特许人应认真填写所有备案事项的信息,并确保所填写内容真实、准确和完整。

제 10조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등록사항을 성실하게 정확하게 완벽하게 기록해야 한다.

第十一条

备案机关应当自收到特许人提交的符合本办法第六条规定的文件、资料之日起10日内予以备案,并在商业特许经营信息管理系统予以公告。

特许人提交的文件、资料不完备的,备案机关可以要求其在7日内补充提交文件、资料。备案机关在特许人材料补充齐全之日起10日内予以备案。

제 11조 해당등록기관은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본 방법 6조의 의거 제출하고 자료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하고 프랜차이즈경영관리시스템에 공고를 발표해야 한다.

프랜차이즈사업자가 제출한 문서, 자료가 구비하지않을 경우, 등록기관은 7일아내로 해당 서류를 보충제출요구를 할수있으며 등록기관은 해당 보충보완하고 제출시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로 등록 절차를 해야 한다.

第十二条

已完成备案的特许人有下列行为之一的,备案机关可以撤销备案,并在商业特许经营信息管理系统予以公告:

- (一)特许人注销工商登记,或因特许人违法经营,被主管登记机关吊销营业执照的。
- (二)备案机关收到司法机关因为特许人违法经营而作出的关于撤销备案的司法建议书。
- (三)特许人隐瞒有关信息或者提供虚假信息,造成重大影响的。
- (四)特许人申请撤销备案并经备案机关同意的。
- (五)其他需要撤销备案的情形。

제12조 다음의 행위가 있을 경우, 등록기관은 등록을 페지하고 프랜차이즈경영관리시스템에 공고를 발표한다.

- (1) 프랜차이즈사업자가 공상등기를 취소하거나 프랜차이즈사업자의 위법경영으로 인한 해당 주관부서에서 영업허가증을 회수한 경우.
- (2) 등록기관에서 사법기관의 프랜차이즈사업자에 관한 등록을 페지하는 사법의견서를 받을 경우.
- (3) 프랜차이즈사업자가 프랜차이즈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숨기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사업에 큰 영향이 있을 경우.
- (4) 프랜차이즈사업자가 등록취소신청을 제출하고 등록기관에서 취소동의한 경우.
- (5) 기타 등록페지가 필요한 경우.

第十三条 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商务主管部门应当将备案及撤销备案的情况在10日内反馈 商务部。

제 13조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상무 주관부서는 동록 및 등록취소상황을 10일 이내로 상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第十四条

备案机关应当完整准确地记录和保存特许人的备案信息材料,依法为特许人保守商业秘密。

特许人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或设区的市级)人民政府商务主管部门可以向通过备案的特许人 出具备案证明。

제 14조 해당등록기관은 완벽하게 정확하게 해당기록을 기입해야 하고 프랜차이즈사업자의 자료 문서를 법에 의거해 영업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는것을 허용하지않는다.(성. 자치구. 직할시)등록 기관의 정부 상무부서는 등록한 프랜차이즈사업자에게 등록증명을 발급해줄수있다.

第十五条

公众可通过商业特许经营信息管理系统查询以下信息:

- (一)特许人的企业名称及特许经营业务使用的注册商标、企业标志、专利、专有技术等经营资源。
- (二)特许人的备案时间。
- (三)特许人的法定经营场所地址与联系方式、法定代表人姓名。
- (四)中国境内全部被特许人的店铺分布情况.
- 제 15조 프랜차이즈영업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아래 사항을 조회할수있다.
- (1) 프랜차이즈사업자의 기업명칭 및 등록상표. 기업표지. 특허.전문기술 노하우.
- (2) 프랜차이즈사업자의 등록시간.
- (3) 프랜차이즈사업자의 경영주소, 연락처, 법정대표자의 이름.
- (4) 중국역내의 프랜차이즈가맹자의 매장 분포상황.

第十六条 特许人未按照《条例》和本办法的规定办理备案的,由设区的市级以上商务主管部门责令限期备案,并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罚款;逾期仍不备案的,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并予以公告。

제 16조 프랜차이즈사업자가 <조례>와 본 방법의 조항에 의거 등록을 하지않을 경우, 구를 설치한 시급 이상의 상무주관부서에서는 시정을 명하고 1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수있으며, 기간이 경과후에도 등록하지않은 경우에는 5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한다.

第十七条

特许人违反本办法第十一条规定的,由设区的市级以上商务主管部门责令改正,可以处1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并予以公告。

제 17조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본 방법 11항을 위한했을 경우, 구를 설치한 시급 이상의 상무주관 부서에서는 시정을 명하고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왜곡이 심한 경우 1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한다.

第十八条

国外特许人在中国境内从事特许经营活动,按照本办法执行。香港、澳门特别行政区及台湾地区特许人参照本办法执行。

제 18조 외국 프랜차이즈사업자의 중국경내에서 프랜차이즈사업 경영활동을 할 경우, 본 방법을 적용하며 홍콩, 마카오, 대만의 프랜차이즈사업자는 본 방법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第十九条

相关协会组织应当依照本办法规定,加强行业自律,指导特许人依法备案。

제 19조 관련 협회는 본 방법 규정에 따라 업종 자율을 강화하고 프랜차이즈사업자를 지도하여 등록을 해야 한다.

第二十条

本办法由商务部负责解释。

제 20조 본 방법의 법적해석은 상무부에 속한다.

第二十一条

本办法自2012年2月1日起施行。2007年5月1日施行的《商业特许经营备案管理办法》(商务部2007年第15号令)同时废止。[1]

제 21조 본 방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7년5월1일부터 시행한<프렌차이즈사업등록 관리방법> (상무부2007년 제 15호령) 페지. 商业特许经营信息披露管理办法 (프랜차이즈사업정보공시관리방법)

2012 年第2号

修订后的《商业特许经营信息披露管理办法》已经2012年1月18日商务部第60次部务会议审议通过,现予发布,自2012年4月1日起施行。《商业特许经营信息披露管理办法》(商务部令2007年第16号)同时废止。

部 长:陈德铭

2012年2月23日

수정후의 <프렌차이즈사업 정보공시관리방법>은 2012년 1월 18일 상무부 제 60회 상무부부회의에서 심사통과하고 현재 발표, 2012년 4월1일부터 시행. < 프랜차이즈사업정보공시관리방법 > (상무부2007년 제 16호령) 페지.

부장: 陈德铭

第一条 为维护特许人与被特许人双方的合法权益,根据《商业特许经营管理条例》(以下简称《条例》),制定本办法。

제1조 프랜차이즈사업자와 프랜차이즈가맹자의 합법적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프랜차이즈사업 관리조례> (이하 <조례>)에 의거 본 방법을 제정한다.

第二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开展商业特许经营活动适用本办法。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역내의 프랜차이즈 사업 종사자는 본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第三条

本办法所称关联方,是指特许人的母公司或其自然人股东、特许人直接或间接拥有全部或多数股权的子公司、与特许人直接或间接地由同一所有人拥有全部或多数股权的公司。

제3조 본 방법에 연관상대는 프랜차이즈사업자의 모회사 및 자연인주주, 프랜차이즈사업자가 직접 또는 간적적으로 전부 또는 다수의 주주권을 소유한 자회사, 프랜차이즈사업자와 직접 또는

간적적으로 동일한 소유자가 전부 또는 다수의 주주권을 소유한 회사.

第四条

特许人应当按照《条例》的规定,在订立商业特许经营合同之日前至少30日,以书面形式向被特许人披露本办法第五条规定的信息,但特许人与被特许人以原特许合同相同条件续约的情形除外。

제4조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프랜차이즈 사업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본 방법 5조에서 규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프랜차이즈 사업자와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기존 계약서와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 경우 제외.

第五条

特许人进行信息披露应当包括以下内容:

- (一)特许人及特许经营活动的基本情况。
- 1.特许人名称、通讯地址、联系方式、法定代表人、总经理、注册资本额、经营范围以及现有直营店的数量、地址和联系电话。
- 2. 特许人从事商业特许经营活动的概况。
- 3. 特许人备案的基本情况。
- 4. 由特许人的关联方向被特许人提供产品和服务的,应当披露该关联方的基本情况。
- 5. 特许人或其关联方过去2年内破产或申请破产的情况。
- (二)特许人拥有经营资源的基本情况。
- 1. 注册商标、企业标志、专利、专有技术、经营模式及其他经营资源的文字说明。
- 2.经营资源的所有者是特许人关联方的,应当披露该关联方的基本信息、授权内容,同时应当说明在与该关联方的授权合同中止或提前终止的情况下,如何处理该特许体系。
- 3. 特许人(或其关联方)的注册商标、企业标志、专利、专有技术等与特许经营相关的经营资源涉及诉讼或仲裁的情况。
- (三)特许经营费用的基本情况。

- 1.特许人及代第三方收取费用的种类、金额、标准和支付方式,不能披露的,应当说明原因,收费标准不统一的,应当披露最高和最低标准,并说明原因。
- 2.保证金的收取、返还条件、返还时间和返还方式。
- 3. 要求被特许人在订立特许经营合同前支付费用的,该部分费用的用途以及退还的条件、方式。
- (四)向被特许人提供产品、服务、设备的价格、条件等情况。
- 1.被特许人是否必须从特许人(或其关联方)处购买产品、服务或设备及相关的价格、条件等。
- 2.被特许人是否必须从特许人指定(或批准)的供货商处购买产品、服务或设备。
- 3.被特许人是否可以选择其他供货商以及供货商应具备的条件。
- (五)为被特许人持续提供服务的情况。
- 1.业务培训的具体内容、提供方式和实施计划,包括培训地点、方式和期限等。
- 2. 技术支持的具体内容、提供方式和实施计划,包括经营资源的名称、类别及产品、设施设备的种类等。
- (六)对被特许人的经营活动进行指导、监督的方式和内容。
- 1.经营指导的具体内容、提供方式和实施计划,包括选址、装修装潢、店面管理、广告促销、产品配置等。
- 2.监督的方式和内容,被特许人应履行的义务和不履行义务的责任。
- 3. 特许人和被特许人对消费者投诉和赔偿的责任划分。
- (七)特许经营网点投资预算情况。
- 1.投资预算可以包括下列费用:加盟费;培训费;房地产和装修费用;设备、办公用品、家具等购置费;初始库存;水、电、气费;为取得执照和其他政府批准所需的费用;启动周转资金。
- 2. 上述费用的资料来源和估算依据。
- (八)中国境内被特许人的有关情况。
- 1.现有和预计被特许人的数量、分布地域、授权范围、有无独家授权区域(如有,应说明预计的具体范围)的情况。
- 2. 现有被特许人的经营状况,包括被特许人实际的投资额、平均销售量、成本、毛利、纯利等信息,

同时应当说明上述信息的来源。

- (九)最近2年的经会计师事务所或审计事务所审计的特许人财务会计报告摘要和审计报告摘要。
- (十)特许人最近5年内与特许经营相关的诉讼和仲裁情况,包括案由、诉讼(仲裁)请求、管辖及结果。
- (十一)特许人及其法定代表人重大违法经营记录情况。
- 1.被有关行政执法部门处以30万元以上罚款的。
- 2. 被追究刑事责任的。
- (十二)特许经营合同文本。
- 1. 特许经营合同样本。
- 2. 如果特许人要求被特许人与特许人(或其关联方)签订其他有关特许经营的合同,应当同时提供此类合同样本。
- 제5조 프랜차이즈 사업자 정보공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여야 한다:
- (1)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경영활동 기본상황.
- 1.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명칭, 주소, 연락처, 법정대표인, 최고 경영자, 등록자본금 액수 , 영업범위 및 현재의 직영점의 수량. 주소. 연락처.
- 2.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경영활동의 개황.
- 3.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등록의 기본 상황.
- 4.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제공하는 제품, 서비서, 및 공시해야 할 연관상대의 기본상황.
- 5.프랜차이즈 및 연관상대의 최근 2년안에 파산 및 파산 신청한 상황.
- (2). 프랜차이즈 경영자원의 기본상황.
- 1. 등록상표. 기업표지. 특허.전문기술 노하우. 경영방식 및 기타 경영자원의 문자설명.
- 2. 경영자원의 소유자가 프랜차이즈사업의 연관대상일 경우, 연관대상의 기본정보. 위임한 내용 및 연관대상과의 위임계약이 종결 또한 조기종료시, 프랜차이즈 관계를 해결내용을 명기해야 한다.
- 3. 등록상표. 기업표지. 특허.전문기술 노하우. 경영방식 및 기타 경영자원 관련 소송 및 중재상황

- (3) 프랜차이즈경영비용의 기본상황.
- 1. 프랜차이즈 사업자 및 제3자가 수취할 사업비용의 내역.금액, 기준 및지불 방식. 공시할수없을 경우, 해당 원인을 설명해야한다. 수취할 금액기준이 통일되지못할 경우,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을 명시해야 하고 해당 원인을 설명.
- 2. 보증금 수취, 반환조건, 반환시간 및 방식.
- 3.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사업 계약전에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비용 지불을 요구할 경우, 해당 비용의 용도 및 반환조건,방식.
- (4)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 설비의 가격 및 조건 등
- 1. 프무차이즈 가맹가가 꼭 프랜차이즈 사업자로부터 제품, 서비스, 설비를 구매해야하는지 여부.
- 2. 프랜차이즈 가맹가가 꼭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지정 (또는 승인)한 공급업체에서 제품, 서비스 및 설비를 구매해야하는지 여부.
- 3. 프랜차이즈 가맹가가 다른 공급업체 혹은 공급업체의 구비조건을 선택할수있는지 여부.
- (5)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상황.
- 1. 업무교육의 구체내용, 제공방식과 실행계획 (교육의 장소, 방식 및 기한 포함).
- 2. 기술지원의 구체내용, 제공방식, 실행계획 (경영자원의 명칭, 종류 및 제품, 시설설비의 종류 포함)
- (6) 프랜차이즈 가맹자 대상의 경영활동 지도. 감독의 구체적 방법.
- 1. 경영지도의 구체내용, 제공방식 및 실행계획 (매장주소 선택, 인테리어, 매장외관 관리, 홍보프로모션 등 포함)
- 2. 감독의 방식, 내용, 프랜차이즈의 의무이행 및 의무위반시 책임.
- 3. 프랜차이즈 사업자 및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소비자의 고발 및 배상에 대한 책임분할.
- (7) 프랜차이즈 사업 영업망에 대한 투자 예산.
- 1. 투자예산에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할수있다. 가맹비; 교육비; 부동산 및 인테리어 비용; 설비, 사무용품, 가구등 비용; 초기 재고; 물, 전기, 가스비용; 영업허가증과 정부 승인절차 이행 비용; 사업운영유동자금.
- 2. 우의 비용항목의 자료 출처 및 계산 의거.

- (8) 중국경내 프랜차이즈 가맹자의 기본 상황.
- 1. 기존 가맹자 및 예상 가맹자의 수량, 분포지역, 위임범위, 독점라이센스영역 여부(독점라이센스영역 있을 경우, 구제지역범위 설명).
- 2. 프랜차이즈 가맹자의 경영상황 (가맹자의 실제적인 투자액, 평균판매량, 원가, 매출 총이익, 순이익등 정보와 우의 항목 출처를 설명)
- (9) 최근 2년간의 회계사 사무소 혹은 감사의 프랜차이즈 사업자 재무회계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요약.
- (10)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최근 5년 내의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 소송 및 중재요청, 관할 및 결과.
- (11) 프랜차이즈 사업자 및 법정대표자의 중요 위법 경영 기록.
- 1. 해당행정집행부의 30만이하의 벌금한 경우.
- 2.형사책임을 추궁한 경우.
- (12) 프랜차이즈 사업 계약서 문본.
- 1. 프랜차이즈 사업 계약서 견본.
- 2.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가맹자와 사업자 (혹은 연관대상)과 프랜차이즈사업 관련 계약서체결을 요구할 경우, 체결할 계약서의 견본도 함께 제공해야한다.

第六条

特许人在推广、宣传活动中,不得有欺骗、误导的行为,发布的广告中不得含有宣传单个被特许人从事 商业特许经营活动收益的内容。

제6조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기만. 오도. 등 과장 홍보 행위를 허락하지않으며 광고물에 프랜차이즈 가맹자의 수익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第七条

特许人向被特许人披露信息前,有权要求被特许人签署保密协议。

被特许人在订立合同过程中知悉的商业秘密,无论特许经营合同是否成立,不得泄露或者不正当使用。

特许经营合同终止后,被特许人因合同关系知悉特许人商业秘密的,即使未订立合同终止后的保密协议, 也应当承担保密义务。

被特许人违反本条前两款规定,泄露或者不正当使用商业秘密给特许人或者其他人造成损失的,应当承担相应的损害赔偿责任。

제7조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가맹자에게 정보를 공시전, 가맹자에게 비밀유지계약서 체결을 요구할수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자는 계약서 체결과정중에서 얻은 사업비밀은 계약서의 최종체결 및 성립여부에 관계없이 타인에게 누설허거나 부정사용할수없다.

프랜차이즈 사업 계약서 종결후에, 이 계약의 체결로 인해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얻은 사업비밀은 계약서 종결후에 관한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하지않은 경우에도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우의 두 규정을 위한할 경우, 비밀누설 및 부정사용으로 인해 프랜차이즈 사업자 및 타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第八条

特许人在向被特许人进行信息披露后,被特许人应当就所获悉的信息内容向特许人出具回执说明(一式两份),由被特许人签字,一份由被特许人留存,另一份由特许人留存。

제8조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가맹자에게 정보공시후, 가맹자는 해당 정보의 내용에 관해 영수설명이 필요(2부), 가맹자 싸인, 1부는 가맹자 보관, 1부는 프랜차이즈 사업자 보관.

第九条

特许人隐瞒影响特许经营合同履行致使不能实现合同目的的信息或者披露虚假信息的,被特许人可以解除特许经营合同。

제9조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중요사항 숨김으로 인해 프랜차이즈사업 계약서가 이행할수없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할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자는 프랜차이즈 사업 계약서를 종료할수있다.

第十条

特许人违反本办法有关规定的,被特许人有权向商务主管部门举报,经查实的,分别依据《条例》第二

十六条、第二十七条、第二十八条予以处罚。

제10조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본 방법 해당 규정을 위반시, 상무주관 부서에 신고를 할수있으며 사실 확인후 <조례> 26조, 27조, 28조에 따라 처벌한다.

第十一条

本办法由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负责解释。

제11조 본 방법의 법적해석은 상무부에 속한다.

第十二条

本办法自2012年4月1日起施行。原《商业特许经营信息披露管理办法》(商务部令2007年第16号)同时废止。

제12조 본 방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프렌차이즈사업정보공시관리방법> (상무부2007년 제 16호령) 페지.